

잘못, 책임 및 처벌 : 처벌판단에 관한 한 가상적 모형*

고 재 흥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논문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행위자의 책임판단과 처벌판단을 다룬 기존 연구들을 3가지 유목으로 분류했다. 기존의 책임판단연구들의 문제점, 특히 종속변인(책임)의 다의미성을 지적하였고 그 개선책으로 잘못판단, 책임판단, 처벌크기 결정은 서로 다른 판단들이고 이것들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 진다고 제안했다. 또한 처벌판단에 관한 가상적인 3단계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가설과 추론들을 근거와 함께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처벌판단을 다루는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각 가설 및 추론들의 검증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Heider(1958) 이후로 특정 결과를 낳은 행위자에 대한 책임판단에 관한 대안 연구가 시작되었다. Heider는 어떤 결과에 환경적 요인이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책임귀인(responsibility attribution)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즉 환경적 요인이 결과에 미친 영향력이 클수록 행위자에게는 책임이 적게 부여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Heider는 책임귀인이 이

뢰지는 수준을 5개로 구분하였다. 그는 어떤 행동에 대한 환경귀인의 크기가 감소하는 정도에 따라 수준을 정했는데 그 수준들은 다음과 같다. (1) 수준 1의 기준은 연합(association)이다. 이 수준에서는 어떤 결과가 행위자와 연합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2) 수준 2의 기준은 인과성(causality, Heider는 commission이라 불렀음)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어떤 결과의 원인이 행위자쪽에 있을 때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Piaget(1932)가 ‘객관적 책임(objective responsibility)’이라 부른 것으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책임이다. (3) 수준 3의 기준은 예전 가능성(foreseeability)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행위자가 원하였든 혹은 원하지 않았든간에 그가 예전하였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한다. (4) 수준 4의 기준은 의도성(intentionality) 지각이다. 이 수준에서는 어떤 결과가 행위자의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책임부여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부여된 책임은 Piaget(1932)가 부르는

* 이글은 서울대 사회심리학 전단세미나에서 두차례에 걸쳐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초고를 세심히 수정해 주신 차재호 교수님과 세미나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타인에게 미리 처벌을 결정한 후, 그에게 잘못이나 책임을 씌우는 것과 같이 정당화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판단순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예: 집단간 차별상황)는 예외적인 것이고 대개는 그 순서가 반대일 것이다. McFatter(1982)는 처벌책략을 총 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필자는 McFatter가 구분한 일반인 제지(general deterrence), 일반인들로 하여금 처벌이 무서워서 피고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기준)책략과 개인적 제지(individual deterrence, 죄를 저지른 피고가 벌이 무서워서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기준)책략을 의미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았다.

'주관적 책임(subjective responsibility)'에 상응하는 것이다(Heider, 1958, p.113). (5) 수준 5의 기준은 정당화(justification)의 존재여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이유나 변명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책임귀인이 결정된다. 즉 어떤 행위의 원인으로 외부 환경적 요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이 환경과 행위자로 분할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 기물을 파괴한 경우, 우리는 행위자인 그 군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Heider는 책임귀인을 귀인의 맵락에서 언급했을 뿐 이자 책임귀인의 다섯 수준이 연령에 따라 발달한다고 제안한 적은 없으나 이후의 여러 연구들이 Heider의 다섯 수준이 연령에 따라 발달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책임판단에서 유치원 아동이나 국민학교 저학년 학생과 같이 낮은 연령에서는 낮은 수준(수준 1, 2)의 기준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그 이상의 연령집단에서는 높은 수준(수준 4, 5)의 기준을 많이 사용하여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Fincham & Jaspars, 1979; Harris, 1977; Shaw & Sulzer, 1964).

Heider 이후로 여러 연구들이 각기 다른 목적을 띠고 책임판단을 다루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책임판단이 이뤄지는 과정을 다루기 보다는 책임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각기 다루고 있다(Fincham & Jaspars, 1980 참조). 책임판단을 경험적으로 다룬 최초의 연구들은 Shaw와 Sulzer(1964)의 연구와 Walster(1966)의 연구이다. Shaw와 Sulzer(1964)는 Heider의 책임귀인에 관한 다섯 수준 각각을 묘사한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국민학생(2학년생)과 대학생 피험자들에게 제시했다. 그런 다음 시나리오속의 결과에 대해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반응하게 하여 만약 피험자들이 "그렇다"에 반응한 경우, 책임의 크기를 5점 척도(작다--많다)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주요 결과는 두 가지 였다. 첫째 책임귀인의 크기는 Heider의 수준 1에서 수준 4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다가 수준 5에서는 다시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어떤 행위에 대한 환경귀인의 크기가 감소할 수록 행위자에 대한 책임귀인이 증가한다는 Heider의 예상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둘째 수준 1과 수준 2에서는 국민학생들이 대학생들에 비해 행위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였으나, 수준 3-5에서는 피험자 집단간에 책임부여 크기의 차이가 없었다. 그들은 두번째 결과를 국민학생들이 대학생들에 비해 연합성(수준 1)과 인과성(수준 2) 기준을 행위자의 책임판단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제시했다.

Walster(1966)는 자동차 사고의 피해크기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책임귀인 크기를 알아 보았다. 그녀의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작은 피해(즉 미약한 재산피해)를 냈 것으로 묘사된 행위자에 의해 큰 피해(즉 인명피해와 큰 재산피해)를 냈 것으로 묘사된 행위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더 크게 부여했다. Walster의 연구 이후에 많은 연구들(예 : Shaver, 1970b)이 피해크기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책임귀인을 경험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존의 책임판단을 다룬 연구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이러한 연구들에서 사용하는 종속변인인 '책임(responsibility)'의 의미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이미 오래 전에 Hart와 Honore(1965)는 책임이 ①역할 책임(role responsibility), ②법적 책임(legal responsibility), ③도의적 책임(moral responsibility), ④인과적 책임(causal responsibility)의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책임'이라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Shaw와 Reitan(1969)은 제재(sanction)와 책임은 항상 共變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제재는 주로 그 행위의 재발가능성에 대한 판단으로 결정되는 반면에, 책임은 행위원인의 부위(locus)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Shaver(1975)도 법적 책임을 다루면서, 이때는 인과성(causality)이 책임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Fisk와 Taylor(1984)는 인과성 판단이 책임판단의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원인과 책임의 구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p. 106). Burger(1981)는 일상생활에서 "-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말은 귀인의 의미, 처벌의 의미 등 여러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을 책임크기 뿐만 아니라 형량, 벌금액수 등으로 다양하게 해야하고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Fincham과 Jaspars(1980)은 인과귀인은 행동으로부터 행위자의 내부적 특성을 추론하는 것으로 본 반면에, 책임귀인은 행위와 행위결과 간의 관계성에 관한 것으로 규정하여 두 귀인을 구분하

였다. 또한 이들은 책임커인은 인과커인 이후에 이뤄진다고 제안하고 있다. Fincham과 Roberts(1985)는 인과판단의 크기가 행위자에 대한 비난크기를 부분적으로만 결정해 준다는 사실을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통해 입증한 바 있다.

실제로 Critchlow(1985)는 피험자들에게 여러 종류의 행위들을 제시하고 다음의 4 가지 종속변인을 측정했다: (1) 책임판단(How responsible was the person in the story?), (2) 비난판단(Do you blame him for what he did?), (3) 인과판단(Was he the cause of the incident?), (4) 처벌판단(How severely should he be punished?). 그 결과 네가지 종속측정치들간의 상관계수가 .20-.70으로 매우 다양했으며, 불법적 행위인 경우에는 비난판단치와 책임판단치가 유사했으나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대체로 책임판단치가 비난판단치와 처벌판단치보다 커졌다. 이 결과를 근거로 Critchlow는 “원인, 책임, 비난 및 처벌 판단치들이 서로 관련되기는 하지만 똑같은 측정치로 취급해서는 안된다”(p.271)라고 주장했다. McGraw(1987)의 연구에서도 나쁜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원인정도, 행위자의 의도, 책임, 행위자의 죄책감 등을 알아 보았다. 그 결과 행위자의 조책감크기와 내부적 원인정도간에는 역관계(즉 부적 상관)가 나타났다. 또한 행위자에게 부여된 책임의 정도와 죄책감정도는 무관하였다. 그러나 행위자에 대한 비난의 정도와 부여된 책임의 정도간에는 정적 관계가 있었다. 이처럼 ‘책임’에 관련된 종속변인들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지적들이 있기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물론 현재의 책임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조차 사용하는 종속변인들이 책임, 귀인, 형량 등으로 서로 다르며, 이것들이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로 인해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가 상충되는 경향이 많았다. 예를 들어 Walster(1966)는 자동차 사고의 심각성을 조변하여 피험자의 행위자에 대한 책임부여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사고가 심각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책임부여 크기가 커졌다. 그러나 Shaver(1970b)의 연구에서는 Walster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사고의 심각성을 조변했으나 피험자들의 행위자에 대한 책임 부여에서(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사소한 사고의 경우가 심각한 사고의 경우보다

더 커졌다. 이런 상충되는 결과가 나온 여러 가능한 이유 중의 하나가 Walster연구의 피험자들은 종속변인 측정을 위한 양극척도의 어휘(Actor was not at all responsible; the accident was completely beyond his control-Actor was completely responsible)에서 “responsible”을 피험자들이 인과적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반면에, Shaver연구의 피험자들은 종속변인 측정을 위한 물음(Do you feel that actor wa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에 나타난 “responsible”을 피험자들이 도의적 책임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인과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간의 상관계수가 매우 낮음을 볼 때(Critchlow, 1986 참조) 상충된 두 결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또한 Phares와 Wilson(1972)의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잘못여부와 사고피해의 크기를 조변하여 피험자에게 행위자의 책임크기를 판단하도록 했다. 그 결과 피험자들은 행위자의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에서만 사고의 피해가 사소한 경우보다 사고의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 행위자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했다. 이경우 ‘책임’이 처벌크기로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고의 원인이나 책임에 대한 판단(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사고는 운전자 책임임)은 이미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1) 첫째, 지금까지 책임판단을 다른 연구들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개관하려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는 종속변인을 ‘책임크기’로 한 연구와 ‘처벌크기’로 한 연구들을 각 주제내에서 서로 분리하여 개관할 것이다. (2) 둘째, 책임판단 연구들의 문제점(특히 종속변인에서의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책임판단과 처벌판단을 분리시킨 가상적인 ‘처벌판단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일반인들이 나쁜 결과를 가져온 타인을 처벌할 때 개입되는 과정들을 찾아보려 한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책임과 처벌을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선 다음에서는 책임판단에 관한 연구문헌들을 (1) 지각자 변인의 역할, (2) 사건의 원인과 피해 크기의 영향, (3) 행위자와 피해자 특성의 효과라는 제목으로 개관할 것이다. 그런 다음 책임판단과 처벌판단이 다른 과정임을 보여주는 처벌판단에 관한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지각자 변인의 역할

1) 책임판단에서의 역할

지각자 변인에 따른 책임판단의 차이를 다른 연구들은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의 연구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책임판단을 다른 연구들 중에는 이 범주에 속하는 연구들이 의외로 많다. 여기에는 Heider(1958)가 책임판단을 5수준으로 구분한 아래로 피험자의 발달수준에 따른 책임부여 양식의 차이를 다른 연구, 피험자의 인종(혹은 문화)에 따른 책임판단의 차이, 피험자의 태도와 성격변인에 따른 책임부여 크기의 차이를 다른 연구들이 있다.

앞서 언급한 최초의 책임판단 연구자 중의 하나인 Shaw와 Sulzer(1964)는 피험자를 국민학교 2학년 학생과 대학생으로 하여 각각 Heider의 5개의 수준 각각을 나타낸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등장인물이 시나리오속의 결과에 대해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예를 들어 수준 1(연합기준)에 해당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어떤 소년이 Perry의 총으로 또다른 소년을 때렸다.

Perry가 맞은 소년에게 책임을 져야 하나?

위와 같은 형태의 5 물음에 대해 피험자들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특정인의 책임크기를 5점 척도(작다--많다) 상에 답하도록 한 결과, 낮은 수준(수준 1, 2)에서는 국민학생 피험자들이 대학생 피험자들에 비해 행위자에게 많은 책임을 부여한 반면에 높은 수준(수준 3, 4, 5)에서는 국민학생들과 대학생들간의 책임부여 크기가 다르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책임커인에 관한 연구들은 결과와 행위자가 연합되어 있는 경우, 결과의 원인이 행위자로 귀속되는, 행위자가 결과를 예견하고 있었던 경우, 결과가 행위자의 의도대로 된 경우의 순서대로 행위자에 부여된 책임크기가 크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Jaspars, 1979; Shaw & Reitan, 1969; Shaw & Sulzer, 1964). 그러나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부여가 줄어든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Shaw와 그의 동료들(Shaw & Reitan, 1969; Shaw & Sulzer, 1964)은 아동, 법률가 및 경찰관을 피험자로 하여 Heider의 여러 수준에 따른 행위들을 제시한 결과, 그들의 책임판단은 위의 결과패턴을 따르고 있음을 발견했다. Jaspars (1979)도 위와 비슷한 방식으로 연령에 따른 책임커인

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들은 피험자 집단은 6세, 8세, 10세, 12세, 및 성인의 5집단으로 하였다. 그 결과 6세 집단을 제외하고 다른 4집단은 모든 수준에서 행위자에 대한 책임커인 크기가 다르지 않았다.

책임판단에 영향을 주는 피험자변인 중 연령 다음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은 피험자의 내외통제성이다 (Phares & Wilson, 1972; Phares, Wilson, & Klyver, 1971). Phares 등(1972)은 다른 독립변인에 덧붙여 피험자들을 내외통제성 척도(Rotter, 1966) 점수에 따라 내적 통제성 집단과 외적 통제성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예상했던 대로 내적 통제성 집단이 외적 통제성 집단보다 사고를 낸 행위자에 대해 책임을 더 많이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런 경향성은 사고의 크기가 심한 경우에만 나타났고 사고의 크기가 미약한 경우에는 내외 통제성에 따른 책임부여의 크기는 다르지 않았다.

또 다른 일련의 연구들은 피험자의 문화차이에 따른 책임판단의 차이를 알아 보았다(Miller, Bersoff, & Harwood, 1990; Miller & Luthar, 1989). Miller 등(1990)은 미국인과 인도인을 피험자로 하여 두가지 독립변인을 조별한 다음 피험자들이 느끼는 책임감(felt responsibility)을 분석하였다. 이들이 다른 첫번째 독립변인은 사건의 심각성으로 가장 심각한 경우는 어떤 타인(예: 부모, 친구, 모르는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이다. 두번째 독립변인은 피해자와 피험자 자신과의 관계로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피해자와 자신을 부모관계로 묘사했고, 가장 먼 관계는 피해자와 자신을 서로 모르는 사이로 묘사했다. 그 결과 미국인들은 피해자와 자신의 관계가 가까운 사이이고 사건이 심각한 경우에 그를 도와주지 못한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인도인들은 모든 사건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도와주지 못한 경우에는 심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문화권의 차이로 해석했다. 즉 미국인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낯선이를 도와줄 것인지의 여부는 개인의 선택문제로 보고있는 반면에, 인도인들은 남을 돋는 것을 모든 사람의 의무로 지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곤경에 처한 타인을 돋지 못했을 때 인도인들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2) 처벌판단에서의 역할

지각자 변인에 행위자에 대한 처벌크기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많다. 그 중 피험자의 性別(gender)에 따른 형량판정을 다른 경험적 증거들은 매우 상충적이다. 어떤 연구들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피고에게 더 가혹한 형량을 구형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다(Nemeth, 1981 참조). 반면에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강간범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가혹한 형량을 구형하였다(Davis, Kerr, Atkin, Holt, & Meek, 1975). 또한 남자와 여자 피험자들의 결정은 집단토의 전, 후에 따라 달라졌다. 즉 한 연구에서 남자 피험자들은 여자 피험자들보다 집단토의 이전에서만 더 가혹했고 집단토의 이후에는 남자와 여자 피험자들이 그들의 형량에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Bray, Struckman-Johnson, Osborne, McFarlane, & Scott, 1978). 또한 피험자의 보수주의-진보주의 태도에 따라 처벌크기가 달라진다. Nemeth와 Sosis(1973)는 보수주의적 태도를 지닌 피험자들이 진보주의적 태도를 지닌 피험자들 보다 같은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보수주의적 태도를 지닌 피험자들이 진보주의적 태도를 지닌 피험자에 비해 행위자의 처벌크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행위자의 신체적 매력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Sosis(1974)은 피험자의 내외통제성에 따른 사고의 책임부여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내적 통제성을 지닌 피험자들이 그렇지 않은 피험자들 보다 사고를 낸 피고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

여러 피험자 변인에 따라 같은 행위결과에 대한 책임판단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험자 변인들이 책임판단에 미치는 효과는 변인의 수가 너무 많고, 이 변인들이 왜 책임판단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명쾌한 설명이 어렵다. 이 변인들은 표면에 나타난 변인들일 뿐이고 심층적인 변인은 책임판단에 관련된 피험자의 관점(혹은 도식)의 차이때문일 가능성에 크다(Carroll & Wiener, 1982).

McFatter(1978)은 피험자들로 하여금 피고에게 형량을 내릴 때 그 기준을 응보(retribution), 생생(rehabilitation), 제지(deterrence) 등 3가지 중 하나로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 다음 여러 종류의 범죄행위(예: 절도, 살인)에 대한 형량을 구형도록 한 결과, 범죄행위의 종류 뿐만 아니라 피험자들에게 지시한 처

벌책략에 따라 구형량이 달라짐을 발견했다. McFatter의 연구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즉 위의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진 피험자 변인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각기 사용하는 처벌기준(혹은 처벌철학)을 반영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피고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는 결과(Nemeth, 1981)는 잘못을 저지른 타인을 처벌함에 있어 여자들은 생생책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남자들은 응보책략을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 때문일 수도 있다(전반적으로 생생책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응보책략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내리는 처벌의 크기가 크다. McFatter, 1978 참조). 또한 당연히 처벌책략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 장면과 여러 시간에서 사람이 이중 어느 한 처벌책략을 선호하여 이를 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사건의 원인과 피해크기의 영향

1) 책임판단에서의 영향

사건내용에 따른 책임귀인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연구되어 오고 있다. 첫째는 어떤 사건의 원인이 어느 부위(locus)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책임귀인이다. 일반적인 결과는 사건의 원인이 외부적(external)인 것 보다는 내부적(internal)인 것일 때, 불안정한(unstable) 원인보다는 안정된(stable) 원인일 때 행위자에 대한 책임귀인이 커 진다는 것이다(예: Schroeder & Linder, 1976). 이런 연구결과들은 귀인연구의 결과(예: Weiner, 1985)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책임귀인과 인과귀인을 구분하기 어렵다.

두번째 연구방향은 방어적 귀인(defensive attribution, Shaver, 1970b)에 관한 연구들이다. Shaver(1970ab)는 Walster(1966)의 연구에서 어떤 사건의 결과가 나쁜것일 수록 사람들은 그 비극의 책임을 행위자에게 돌린 경향성을 다음과 같은 방어적 귀인으로 해석했다. 방어적 귀인이라란 사람들이 나쁜 결과의 책임을 외부적인 것(예: 재수 없음)으로 돌린다면 그러한 외부적 원인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도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자신들을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피하는 방편중의 하나로서 나쁜 결과의 책임을 행위자에게 부과하여 버린다. 그리하여 그런 나쁜 결과의 책임이 행위자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방어적 귀인 형태는 결과가 나쁜 것일수록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Shaver(1970b)는 Walster의 또 다른 연구(1967)에서 피해크기에 따른 책임부여 크기가 차이를 보이지 않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두연구(1966년 연구와 1967년 연구)를 자세히 비교했다. 그 결과 두연구에서 사용된 나쁜 결과가 피험자에게 위협을 주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발견했다. 1966년 연구에서 자동차 사고를 냈 행위자의 상황과 피험자(대학생) 자신의 상황이 유사하여 그런 사고는 피험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반면에 1967년 연구에서 주택을 샀다가 다시 팔아 손해를 본 행위자의 경우는 피험자(대학생) 자신의 상황과 유사하지 않아 위협적이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즉 방어적 귀인이 일어나려면 피험자들이 위협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근거로 하여 Shaver는 방어적 귀인이 일어나는 조건을 규정하였다. 그는 방어적 귀인이 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서만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관련성(relevance)이란 크게 상황 유사성(situational similarity)과 개인적 유사성(personal similarity)에 의해 결정된다. 즉 상황 유사성과 개인적 유사성이 모두 끊 때 방어적 귀인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서 방어적 귀인이 일어나려면 먼저 나쁜 결과가 피험자들에게 위협적이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일어난 상황이 피험자들에게도 부딪치게 될 가능성이 커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행위자에게 나쁜 결과를 갖다 준 상황과 피험자 자신의 상황간의 지각된 유사성”이 상황 유사성이다(Shaver, 1970b, p.106). 또한 나쁜 결과가 피험자 자신에게 위협적이려면 그 결과를 만든 행위자와 피험자가 개인적으로 유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적 유사성은 “행위자와의 지각된 신념, 가치, 및 개인적 특성들의 일치성”을 의미한다(Shaver, 1970b, p.106).

Shaver(1970b)는 상황 유사성을 방어적 귀인의 필요 조건으로 보고 충분조건으로서 개인적 유사성을 제시하였다. 그는 Walster의 연구절차에 개인적 유사성을 첨가하여 반복검증(replication)을 시도했으나, Walster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피해크기에 따라 행위자에게 부여된 책임의 크기가 다르지 않았다 Shaver,

1970b 실험 3¹. 또한 그는 자신의 실험 1에서 개인적 유사성을 행위자와 피험자의 나이를 같게 혹은 다르게 하여 조변하였고, 실험 2에서는 행위자의 태도와 가치를 피험자 자신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혹은 매우 다른 것으로 알려 줌으로써 조변하였다. 두실험 모두에서 행위자와 자신이 유사한 조건이 유사하지 않은 조건에 비해 같은 결과(여기서는 Walster연구의 심각한 사고조건임)에 대한 행위자 책임이 끊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 결과 실험 1에서는 개인적 유사성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실험 2에서는 피험자 자신과 유사한 경우에 비해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서 같은 피해를 일으킨 행위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했다. 이는 Shaver의 예언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또한 실험 3에서는 피해크기에 따라 행위자에게 부여된 책임의 크기가 다르지 않아 방어적 귀인의 실재여부에 의문점을 던져 주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Shaver가 제시한 방어적 귀인의 발생조건들의 타당성을 검증하려 시도했다(예: Chaikin & Darley, 1973; McKillip & Posavac, 1972; Shaw & Skolnick, 1971). 특히 Shaw와 McMartin(1977)은 상황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만 방어적 귀인이 나타나며, 덧붙여 행위자와 판단자가 개인적으로 유사한 경우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판단이 판대해지고, 행위자와 판단자가 유사하지 않은 경우는 책임판단이 가혹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위의 두 경우 모두가 자기 방어적 동기 때문에 나온 방어적 귀인이라 보았으나 이중 후자의 경우를 진정한 의미의 방어적 귀인이라 하였다. Phares와 Wilson(1972)는 행위자의 잘못이 분명한 상황에서만 방어적 귀인이 일어남을 밝혔다. 이런 연구들은 방어적 귀인이 일어나는 조건들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Burger(1981)는 방어적 귀인 가설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Meta-analysis한 결과, 여러 반증되는 결과들(예: Shaw & Skolnick, 1971; 이에 대한 논의를 보려면 Fincham & Jaspars, 1980 참조)에도 불구하고 방어적 귀인 현상은 존재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Burger는 방어적 귀인이 나타나는 조건으로서 개인적 및 상황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일부의 대안적 설명(예: Brewer, 1977)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사고의 책임을 동기적으로 왜곡하려는 경향성이 존재한다”(p.507)고 결론지었다.

2) 처벌판단에서의 영향

피해크기가 책임판단에 미치는 효과와는 달리 종속변인을 처벌크기(예: 벌금액수, 형량)로 한 연구들에서는 피해크기에 따른 처벌크기의 차이가 일관성있게 입증되었다. McFatter(1978)는 여러 종류의 범죄유형(심각성에 따른 유형)을 피험자들에게 제시한 후, 범인에게 적절한 형량을 내리도록 하였다. 그 결과 좀도둑질, 폭력, 절도, 강간, 살인죄 등에 대해 대학생 피험자들이 내린 형량크기는 살인(징역 9.56년)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강간(8.76년), 강도(6.65년)의 순서였다. Rosen과 Jerdee(1974)는 조직장면에서 구성원이 조직의 규칙을 어겼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의 크기는 그가 조직에 끼친 피해의 크기가 클수록 커진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Phares 등(1972)의 연구에서는 자동차 사고의 피해크기를 조변한 다음 책임판단 이외에도 처벌크기(벌금액수와 면허정지 기간)를 알아 본 결과, 피해크기가 작은 조건보다 큰 조건에서 사고자에게 부여한 벌금액수가 일관성있게 컸으며 면허정지 기간도 더 길었다.

이처럼 피해크기에 따른 처벌크기가 커지는 일관성있는 결과로 볼 때 방어적 귀인이 나타나는 조건들이 행위자의 처벌판단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해주는 것으로서, 책임판단과 처벌판단이 다른 과정임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즉 피해의 크기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판단 보다는 처벌판단(특히 법률적 처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 같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특성효과

사건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여러 변인들이 행위자의 책임이나 처벌의 부여에 영향을 준다. 대표적인 변인들로서는 행위자의 전과기록(prior record), 사회적 경력(social history),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 신체적 매력도(physical attractiveness)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지위에 따라 행위자의 처벌크기가 달라진다는 연구도 있다(Jones & Aronson, 1973).

I) 책임판단에서 나타난 효과

Finny, Merrifield 및 Helm(1976)은 자동차 사고자의 지위를 은행장, 출납원, 은행수위 등으로 하여 피험자들에게 자동차 사고의 책임을 판정하도록 했다. 그

결과 피험자들은 지위가 높을수록 사고책임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으로 판단했다.

책임커인에 있어서의 행위자-관찰자 차이를 알아 본 연구도 있다. Harvey, Harris 및 Barnes(1975)는 피험자들에게 행위자와 관찰자 중 한가지 역할을 부여한 다음 학생이 잘못된 반응을 한 경우 전기쇼크를 강하게 혹은 약하게 주는 선생의 책임을 물었다. 그 결과 심한 처벌을 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행위자(선생) 역할의 피험자들보다 관찰자 역할의 피험자들이 학생이 받는 고통에 대한 선생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 결과는 방어적 귀인이 관찰자의 역할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처벌판단에서 나타난 효과

사회적 지위와 신체적 매력이 책임이나 처벌부여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는 데는 두 가지 상반되는 가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사회적 지위나 매력이 높은 피고는 동정심을 불러 일으켜 자비로운 처벌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Landy와 Aronson(1969)은 피고의 지위와 신체적 매력을 조변하여 피험자들이 부여하는 형량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비매력적인 피고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피고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이런 결과 형태는 Sigall과 Landy(1972)의 연구에서 반복 입증되었다. Sigall 등은 매력적이고, 온화하고, 다정한 피고들이 비매력적이고, 냉혹하고, 접근하기 힘든 피고들보다 더 자비로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Nemeth와 Sosis(1973)도 존경심이 낮은 사람이 존경심이 높은 사람보다 같은 사고에 대해 더 비난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러나 최근 Miller, Chino, Harney, Haines 및 Saavedra(1986)는 사회적 존경을 동조지위(conformity status)와 권력지위(power status)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표적인물의 동조지위(낮음: 문제인, 높음: 모범시민)는 예상되는 방향으로 처벌에 영향을 주지만, 권력지위(피고의 직업 등)는 처벌부여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피고의 외모가 처벌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많다(예: Efran, 1974; Landy & Aronson, 1969; Sigall & Ostrove, 1975). 비록 Dion(1972)은 피고에게 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피고의 외모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했으나, Monahan(1941)은 아름다운 여인은 그들이 고소당한 범죄에서 유죄선고를

받는 경우가 더 적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또한 Efran (1974)은 비매력적인 피고에 비해 매력적인 피고에게 부과되는 벌이 훨씬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Sigall과 Ostrove(1975)는 피고의 매력도와 범죄의 성질을 조변하여 이 두 변인이 처벌 크기에 주는 영향을 알아 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는 매력적인 피고가 비매력적인 피고에 비해 더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의 범행이 자신의 매력적 외모를 이용한 경우 (즉, 사기죄)는 피고의 매력도에 따른 처벌의 크기가 다르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론은 범죄가 신체적 매력과 관련된 것인 경우는 매력적 피고가 누리던 이점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드물지만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피해자의 잘못크기와 행위자에 대한 처벌크기가 달라짐을 밝힌 연구도 있다(Jones & Aronson, 1973). Jones 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처녀, 기혼녀, 이혼녀로 조변하여 그녀가 강간당한 것으로 묘사했다. 이때 피험자들은 피해자가 이혼녀인 경우보다는 처녀나 기혼녀인 경우에 피해자에게 잘못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한 반면에, 그 경우 행위자에게는 더 무거운 형량을 내렸다. 그러므로 사건외적 변인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불리하게 행위자에게 작용할 수 있다.

처벌판단에 관한 한 가상적 모형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책임이나 처벌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종속변인을 책임, 원인, 잘못, 죄책감, 처벌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러 연구자들이 이 개념들이 서로 같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 바는 있지만 이들도 역시 개념들의 분명한 구분을 입증한 적은 없다. 또 다른 문제점은 책임판단을 다룬 많은 연구들이 몇몇 예외는 있지만(예: Brewer, 1977), 책임 판단

에 개입되는 포괄적 인지과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어떤 특정변인이 책임판단 혹은 처벌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피험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책임판단은 매우 중요하고 실용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론(예: 귀인이론)에 묻혀 있거나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통합된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과정과 처벌을 부여하는 과정을 분명히 구분하여 밝혀야 한다.

Heider(1958)은 행위자가 내부적 원인에 의해, 외부적 강요없이, 그리고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이 행위자에게 귀속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Heider의 지적은 책임판단에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처벌판단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아직은 처벌판단의 선형조건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한 연구자는 없다. 그러므로 먼저 책임판단과 처벌판단 각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그런 다음 각 요인의 효과를 요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처벌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 결과의 회복여부, 행위자 자신이 입은 피해정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는 각각 행위자에 대한 처벌크기를 다르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지만 이를 모두 지각된 피해크기(perceived severity of outcome)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처벌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행위자의 책임크기를 포함하여 수 없이 많지만, 이것을 매개하는 심리적 과정은 소수일 것이다. 이제는 이런 요인들이 왜 처벌판단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이다. 본 논문에서 가정한 처벌판단의 흐름도는 다음의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에서 보듯, 처벌판단의 한 가상적 모형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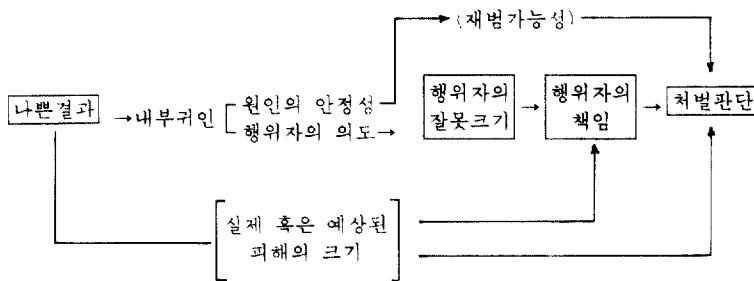


그림 1. 처벌판단이 이루어 지는 가상적인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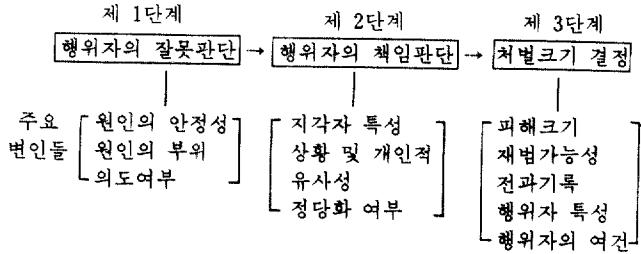


그림 2. 처벌판단에 관여되는 3단계 심리적 과정 및 주요 변인들

처벌판단이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진다고 보여, 어떤 나쁜 결과의 원인이 행위자에게 내부原因之一된 경우를 전제로 한 모형이다. Fincham과 Jaspars(1980)은 상식적으로 귀인, 책임, 비난이 순서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제안한 바는 있으나, 이를 경험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 그러나 처벌판단 모형에서는 (내부)귀인을 전제로 한 모형이고, Fincham 등의 책임판단과 비난 판단을 같은 범주의 판단으로 간주한다. 또한 처벌판단 모형에서는 책임(혹은 비난)판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처벌크기에 대한 판단을 최종 판단으로 간주한다. 또한 행위자의 잘못판단, 행위자의 책임판단 및 처벌판단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그 이유는 잘못판단이 나쁜 특정 결과의 행위자귀인 정도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에 대한 지각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에, 도의적 책임판단은 행위자의 잘못크기 뿐만 아니라 결과의 예견여부, 행위자와 지각자간의 상황 및 개인적 유사성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처벌판단은 행위자의 잘못크기와 책임크기 뿐만 아니라 피해크기, 재벌가능성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이처럼 각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요인의 수가 잘못판단, 책임판단, 처벌판단의 순서대로 많아지기 때문에 처벌판단의 3단계 모형에서는 잘못판단→책임판단→처벌판단의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한다. 그 이외에도 각 판단들의 가능한 대안적 순서들 중에는 (1) 책임판단→잘못판단→처벌크기 결정, (2) 잘못판단→책임판단→처벌크기 결정,

(3) 책임판단←잘못판단→처벌크기 결정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처벌크기 결정이 잘못판단이나 책임판단을 결정해 준다는 대안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상식과 맞지 않아 보인다¹⁾. 본 모형에서 가정한 각 판단의 순서와 각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주요 변인들의 요약은 그림 2에 나와 있다.

처벌판단이 이뤄지는 제 1단계는 잘못(여기서는 결과가 나쁜 것일 때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잘못임)판단 단계이다. 여기서는 피험자들이 먼저 나쁜 결과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각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나쁜 결과의 원인이 행위자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행위의 원인이 안정적 원인인지 혹은 불안정한 원인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또한 그 행위가 의도적 행위였는지의 여부도 판단할 것이다. 여기에 관여된 관련 변인으로서는 행위자가 그 행위를 할 때의 상태(예: 술에 취한 상태)나 외부적 강요의 존재여부 등을 꼽을 수 있다. 1 단계에서 그결과가 행위자의 내부적 원인에 의한 것이고 의도가 있었던 행위로 간주 될 수록 행위자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될 것이다.

제 2단계는 **責任判断**(responsibility judgment) 단계이다. 여기서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행위자쪽에서의 감정은 죄책감)을 의미한다. 이때 사람들은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잘못정도 뿐만 아니라 그가 그런 결과를 예견하고 행동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또한 자신과 행위자의 처지를 비교하여 행위자에 대한 책임크기를 판단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결과의 잘못이 행위자쪽에 있을수록, 그가 결과를 예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클수록, 자신과 행위자의 처지가 다를수록 우리는 그에게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를 비난하게 될 것이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책임’은 2단계에서

1) 타인에게 미리 처벌을 결정한 후, 그에게 잘못이나 책임을 씌우는 것과 같이 정당화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판단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예: 짐단간 차별상황)는 예외적인 것이고 대개는 그순서가 반대일 것이다.

내려지는 판단의 크기일 것이다.

제 3단계는 처벌의 크기를 意思決定 (decision making)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행위자의 책임크기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끼친 피해크기, 재범 가능성, 판단자가 지닌 처벌책략, 판단자의 벌에 대한 가치관과 이데오로기, 그의 성격특성(예: 권위주의 성격) 등이다(Carroll, Perkowitz, Lurigio, & Weaver, 1987 참조). 그 이외에도 행위자의 전과여부, 학력, 가정환경, 성품 등 여러 변인들이 행위자에 내릴 처벌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들이 이런 정보들을 가능한 한 최대로 사용하여 행위자에 대한 처벌크기를 결정하려 하겠지만, 사람마다 혹은 사례마다 이것들 중 어떤 정보는 다른 정보에 비해 더 중요하게 사용될지도 모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일반인들이 타인에 대한 처벌크기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크기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McFatter, 1982 참조), 그중 대표적인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因果應報” 등으로 대변되는 형평원리 (equity principle)이다(Austin, Walster, & Utine, 1976). 즉 사람들은 행위자가 만든 피해의 크기 만큼 그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책략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사회적 통제를 위한 본보기로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재범의 방지(처벌을 가혹하게 내림으로써 벌이 무서워서 그가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로서의 처벌도 있을 것이다. 본 모형에서는 처벌크기를 결정하는데 행위자의 책임크기 이외에도 중요한 정보는 행위자의 행동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왔는지의 판단, 그가(혹은 다른 사람들이) 다시 그런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처벌크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또다른 두 요소의 가중치는 사건유형에 따라(McFatter, 1982), 판단자의 처벌철학(penalty philosophy)에 따라 다를 것이다(Hogarth, 1971). 경우에 따라서 특정 범죄(예: 강간죄)에 대해서는 어느 한 기준으로 행위자의 처벌크기를 결정할 수도 있다(McFatter, 1982). 직관적으로 볼 때 위의 모든 처벌기준들이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선택되어 처벌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행위

자의 행동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왔는지의 판단에 사용되는 정보들은 직접적인 결과의 심각성(Shaver, 1970b; Walster, 1966, 1967), 결과의 회복 가능성(Shaver, 1970a), 피해자의 지위(Jones et al., 1973), 행위자가 입은 피해정도(Austin et al., 1976), 공범자의 현황(Dejong, Morris, & Hastorf, 1976) 등이다. 그가 다시 그런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판단에 사용되는 정보는 원인의 안정성차원, 행위자의 전과여부, 행위자의 주변여건, 행위자의 성품일 것이다. 이때 어느 정도의 처벌이 그와 유사한 다른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고려에 사용되는 정보들은 행위자 행동의 적절성(appropriateness), 행위자와 유사한 사람들의 집단크기, 행위의 일반적인 발생가능성 등일 것이다.

위의 세가지 기준은 실제로 사법 판결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기준으로서 일반인들도 순박한 배심원(naive jury)으로서 가능한 한 여러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3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처벌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매우 많고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Kelley(1971)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적어도 세가지 판단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1) 그가 좋은 사람인가 혹은 나쁜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이고, (2) 그 행동 자체가 좋은 행동인가 혹은 나쁜 행동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나머지 하나는 (3) 그 행위자를 칭찬할 것인지 혹은 비난할 것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Kelley의 주장을 처벌판단의 3단계 모형과 비교하면, 앞의 두 판단은 행위자와 행위의 확인에 해당하고 세번째 판단은 책임의 크기를 결정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처벌판단의 3단계 모형에서는 Kelley의 주장이 외에 처벌크기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Kelley는 이런 판단들의 시간적 선후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는 반면에 처벌판단 모형에서는 이들이 시간적 선후를 지닌 단계를 강조한다.

몇가지 가설과 추론들

그림 2에 나타난 처벌판단의 3단계 모형은 행위자의 잘못판단, 책임(죄책감)판단, 처벌크기 판단은 각기 다른 개념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가정의 근거는 두가지이다. 먼저 이론적 근거로서 책임판단의

문제를 다른 이전 연구들에서 사용된 '책임'의 의미가 다양할 수 있으며(Hart & Honore, 1965 참조), 원인, 책임, 비난, 처벌 등이 서로 관련되지만 같은 측정치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이다(예 : Critchlow, 1985). 두번째 근거는 이전 연구들의 종속변인인 원인, 책임, 잘못, 처벌 등이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각 종속변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피해크기를 다른 연구들 중에서 종속변인을 '책임'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피해크기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크기가 다르지 않게 나타난 연구가 많았던 반면에(예 : Shaver, 1970b ; Shaw & Skolick, 1971 ; Walster, 1967), 종속변인을 '처벌크기'로 한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피해크기가 풀수록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크기도 크게 나타났다(예 : McFatter, 1978 ; Rosen & Jerdee, 1974).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의 시사점에 근거하여 필자는 원인, 책임, 잘못, 비난, 처벌, 죄책감 등의 개념이 비록 서로 혼동되는 것들이지만, 잘못, 책임, 처벌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잘못은 나쁜 결과의 원인이 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잘못은 원인의 특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책임(도의적 책임)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그것의 표현은 관찰자쪽에서는 적대감(예 : 비난)으로 행위자쪽에서는 죄책감, 미안함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처벌은 행위자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책임을 부여하는 행동양식이다.

이상과 같은 가정과 처벌판단 모형(그림 1, 그림 2 참조)에 근거하여 몇 가지 가설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가설 I. 행위자의 잘못판단은 행위자의 의도성(intentionality)에 의해 주로 결정될 것이다.

가설 II. 비난크기는 행위자의 잘못크기와 죄의 크기(피해크기)의 합(addition)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추론 1. 피해의 크기가 같다면, 행위자의 잘못이 풀수록 행위자에게 더 많은 비난을 할 것이다.

추론 2. 행위자의 잘못크기가 일정하다면(혹은 알 수 없다면), 피해의 크기가 풀수록 행위자에게 더 많은 비난을 할 것이다.

가설 III. 재범가능성은 확률에 의해 정의되고, 어떤 특정인이 같은 혹은 유사한 사건을 일으킬 가능

성을 뽑에 접근할 수는 있으나 결코 뽑아 될 수는 없다. 재범 가능성 판단에는 현재 행위에 대한 원인의 안정성 차원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무관한 행위자의 전과여부, 행위자의 성품, 주변여건, 학력 등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설 IV. 죄의 크기는 행위자의 어떤 행위가 피해자에게 혹은 사회에 끼친 실제의 피해크기 뿐만 아니라 예상된 피해크기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다. 그러므로 이는 피해자와 판단자가 상황적으로, 개인적으로 유사할 수록 크게 지각되는 반면에, 행위자와 판단자가 상황적으로, 개인적으로 유사할 수록 작게 지각될 것이다.

가설 V. 처벌크기에 대한 판단은(행위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크기) × (재범가능성 + 죄의 크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추론 1. 행위자가 피해를 끼친 주체였다면, 죄의 크기가 풀수록, 그리고 재범가능성이 높을 수록 처벌크기는 클 것이다.

추론 2. 행위자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죄의 크기와 재범 가능성에 관계없이 그에게 벌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도의적 책임(비난 혹은 죄책감)크기와 처벌크기를 나눈 것에 대한 근거도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이론적 근거로서 책임연구를 다른 이전의 연구들에서 종속측정치를 " -- 에 (계) 책임있다(responsible for)"로 한 경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원인부위(locus of cause)와 원인의 안정성 차원(Schroeder & Linder, 1976),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경력(Bray et al., 1978 ; Nemeth & Sosis, 1973), 행위자의 전과기록 여부(Finney et al., 1976) 등이다. 이와는 달리 처벌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들은 지각된 피해크기(McFatter, 1978 ; Walster, 1966), 보상가능성(Shaver, 1970), 피해자의 지위(Jones et al., 1973), 행위자 자신이 입은 피해정도(Austin et al., 1976), 공범자의 현황(DeJong et al., 1976), 및 재범가능성(Carroll & Payne, 1977) 등이다. 이처럼 이전 연구들에서 다른 종속측정치에 따라 그 종속측정치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다름을 볼 수 있다.

처벌크기 결정에 대한 가설(가설 V)에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하다. 즉 적절한 크기의 처벌을 내리는 일은 일종의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이고, 일반인들도 순박한 배심원(*naive jury*)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들도 타인을 처벌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려 할 것이다. 합리적 의사결정이론 중 대표적인 것은 기대-가치 이론(*Edwards, 1954*)이다. 기대와 가치는 결정맥락에 따라(즉 어떤 결정이나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예 : *Weiner, 1985*), 여기서 기대는 '그 행위자가 진범일 가능성'으로, 가치는 '벌의 효율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벌이 효율적이려면 재범 가능성이 클수록 그리고 죄의 크기가 클수록 커야 하기 때문에 특정 크기의 벌의 효율성은 재범 가능성과 죄의 크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또한 죄의 크기는 그가 끼친 피해의 주관적 크기로 조작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처벌크기는 행위자의 책임여부(즉 그가 진범일 가능성)와 (재범가능성+죄의 크기)간의 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있었던 실제의 재미있는 사건을 예로 들어 보겠다. A씨(70세)는 서울 지방 법원에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그는 B씨(50세)의 부인 C씨(46세)와 여관에서 정을 통한 혐의로 B씨에 의해 고소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고령인데다 먼저 C씨를 유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기소는 하지 않았다(*한국일보, 1991년 10월 31자*). 먼저 법원이 든 이유를 보면 고령, 책임없음을 들고 있다. 첫째 이유인 고령은 A씨의 재범가능성을 알려 주는 정보이며, 둘째 이유(먼저 유혹하지 않았음)는 A씨의 책임크기를 알려 주는 정보이다. 처벌크기가 책임크기와 (재범가능성+죄의 크기)간의 곱에 의해 이뤄진다면, A씨에 대한 처벌크기는 0이다. 왜냐하면 처벌크기를 결정하는 항목들 중에서 책임크기가 0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언은 우리의 상식과 일치한다.

통상 처벌크기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행위자의 책임크기는 확률적 의미로 볼 때, 1.0이다. 다시 말해 행위자는 나쁜 결과의 단독적 주체자이며 그 증거도 분명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는 처벌크기가 재범가능성과 죄의 크기에 의해 이뤄진다. 그러나 때로 나쁜 결과의 책임이 여러 사람으로 분할되는 경우도 있고, 단독 행위라 하더라도 행위자의 책임크기가 1.0이라고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예들은 행

위자와 피해자의 쌍방죄가 적용되는 경우, 공범자가 있는 경우(*DeJong, et al., 1976*) 등이고,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예들은 행위자(피고)가 진범이라는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정보가 행위자(피고)에 대한 처벌크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처벌판단 공식에 따르면 나쁜 결과에 대한 행위자(피고)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책임이 없다고(즉 0) 판단될 때는 그에 대한 처벌크기가 0이 된다.

처벌크기가 (재범가능성+지각된 죄의 크기)에 의해 서도 결정된다는 가설은 다음의 세 가지 근거를 기초로 하고 있다. 첫째 재범가능성의 결정요인들에 따라 처벌크기가 달라짐을 보고한 연구들이 많다. 예를 들어 범죄 원인의 안정성(stability) 차원에 의해 처벌크기가 달라짐을 보여 준 연구들뿐만 아니라(*Carroll, 1978; Carroll & Payne, 1976, 1977*), 직접 범죄의 원인을 조변하여 안정적 원인(예 : 정신병적 성격)에 의한 범죄가 불안정적 원인(예 : 일시적인 해고)에 의한 범죄보다 범인에게 부여된 형량이 크다는 사실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Saulnier & Perlman, 1981*). 또한 변호사들의 변호내용 분석한 결과, 주로 불안정한 원인에 의해 혹은 의도적이 아니였음(예를 들어, '실수로---', '--가 시켜서', '술김에---', '무의식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을 강조하고 있었다(*Fincham & Jaspars, 1980*). 전문적인 법률가들은 피고의 처벌크기를 결정할 때, 주로 피고의 재범방지 기준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결과도 있다(*Carroll & Payne, 1977*).

두번째 근거는 지각된 피해의 크기에 따라 처벌크기가 달라짐을 보고한 연구들이 많다는 점이다. 피해의 심각성을 직접 조변하여 책임부여의 크기를 알아 본 연구들의 대표적인 예들은 다음과 같다. *Phares* 등(1972)의 연구에서 자동차 사고의 피해크기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사고자에 대한 처벌부여 크기(벌금액, 면허정지기간)를 알아 보았다. 그 결과 피험자들은 사고의 피해크기가 클수록 사고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McFatter*(1978)는 범죄유형(폭행, 도둑질, 사기, 강간, 살인)에 따른 형량크기를 알아 본 결과 피해가 큰 범죄를 저지른 피고에 대한 판결형량이 많았다. *Rosen*과 *Jerdee*(1974)의 연구결과에서도 조직구성원에 대한 처벌의 크기는 그가 조직에 끼친 피해의 크기와 비례함을 볼 수 있었다. 그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피해크기가

처벌크기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본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DeJong 등(1976)의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매력도가 낮은 경우보다는 높은 경우가 같은 결과(예: 강간)에 대해 피해의 크기가 크다고 지각하였고 행위자에 대해 처벌크기가 컸다. 강간범에 대한 구형량을 남여 별로 분석한 Davis 등(1975)의 연구에서는 여자 피해자들이 남자 피해자들에 비해 무거운 형량을 내렸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같은 강간죄의 피해크기를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크다고 지각했기 때문이다.

세번째 근거는 사람들이 처벌할 때 많이 사용하는 처벌책략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통상 처벌책략으로 분류되는 종류는 4가지이다(예: McFatter, 1982)²⁾. 첫째 제지(deterrence)책략으로 이는 그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벌이 무서워서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기준이다. 둘째 개생(rehabilitation)책략으로서 이는 그에게 잘못했음을 깨우치게 할 만큼의 벌을 줌으로써 그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준이다. 세째 응보(retribution)책략으로서 이는 지은 죄의 크기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이다. 즉 이 기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변되는 기준이다. 네째 자격정지(incapacitation)책략으로서 이는 그가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주로 수감시킴으로써)는 기준이다. 이상의 4가지 기준들은 모두 벌의 효율성에 대한 각기 다른 축면들을 다투고 있으며, 이중 3개(제지, 개생, 자격정지)는 ‘재범방지’ 기준이라 할 수 있고, 나머지 하나(응보)는 ‘피해크기에 따른 처벌’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나열한 4개의 처벌책략들은 사실상 2개의 처벌크기 판단기준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기준이 다르고, 사건의 유형에 따라 적용하는 처벌기준이 다르다(Forst & Wellford, 1981; Hogarth, 1971; McFatter, 1978; Wheeler, Bonacich, Cramer & Zola,

1968). McFatter(1982)는 강간죄의 경우 응보책략이 더 자주 사용되고, 살인죄의 경우 생생책략이 더 자주 사용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Carroll 등(1987)은 개인결과와 선고목표(sentencing goals)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통제성부위, 권위주의 정도 등)과 이데오로기야 따라 선고행동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은 ‘재범방지’ 기준과 ‘피해크기’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처벌크기를 결정하되 사건유형과 개인에 따라 각 기준의 적용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개인에 따라 사건의 유형에 따라 처벌크기에 사용되는 기준의 적용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처벌크기를 결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w_1 과 w_2 는 가중치임).

$$\text{처벌크기} = (\text{행위자의 책임크기}) \times$$

$$[w_1(\text{재범가능성}) + w_2(\text{죄의 크기})]$$

예비연구

예비연구(고재홍, 1991)는 세가지 목적을 위해 수행되었다. 첫째 사람들이 잘못, 책임 및 처벌을 각기 구분하여 행위자에 대한 단단에 사용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였다. 둘째 두가지 독립변인(피해크기, 의도여부)이 여러 종속변인(특히 잘못, 책임 및 처벌판단)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였다. 세째 처벌크기에 관한 본 모형의 예언공식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피험자

피험자는 경남대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 80명이었다.

독립변인

이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인은 두가지였다. 하나는 피해크기로서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낸 조건과 작은 피해를 낸 조건으로 구성되었고, 다른 하나는 행위자의 행위의도성으로서 행위자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실험설계는 2×2 요인설계이었고 각 조건에 20명의 피험자가 무선배정되었다.

2) McFatter(1982)는 처벌책략을 총 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필자는 McFatter가 구분한 일반인 제지(general deterrence), 일반인들로 하여금 처벌이 무서워서 피고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기준)책략과 개인적 제지(individual deterrence, 죄를 저지른 피고가 벌이 무서워서 다시는 그런 죄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기준)책략을 의미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았다.

종속변인

종속변인은 책임과 관련된 여러 판단들, 즉 행위자의 책임정도, 도의적 책임정도, 비난강도, 행위자의 죄책감크기, 행위자의 잘못크기, 범행의도, 지각된 피해크기, 재벌 가능성, 행위자의 인상평정치 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7점척도[예: 잘못이 전혀 없다 (1) --전혀으로 잘못이다(7)]상에 평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처벌크기에 대한 판단치를 알아 보기 위해 징역크기(최소 1개월에서 최대 20개월)와 벌금액수(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절차

피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두가지 독립변인이 포함된 사전개요 시나리오(아래의 시나리오 내용은 피해가 큰 조건이며 의도가 있는 조건임)를 제시한 후, 각 종속측정치에 반응하도록 했다.

송경삼씨(27세,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는 지난 3월 20일 주거침입 및 절도혐의로 영등포 지검에 기소되었다. 그는 18일 밤에 김성철 씨 집에 들어가 장통속의 현금과 귀금속 등 약 1000여 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이다. 다행히 피해자인 김성철 씨는 잊어 버렸던 손실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다.(피해가 큰 조건에서는 밀줄친 부분의 내용이 '그러나 피해자인 김성철 씨는 잊어 버렸던 손실액중 약 200만원어치의 현금과 귀금속만을 회수하였다'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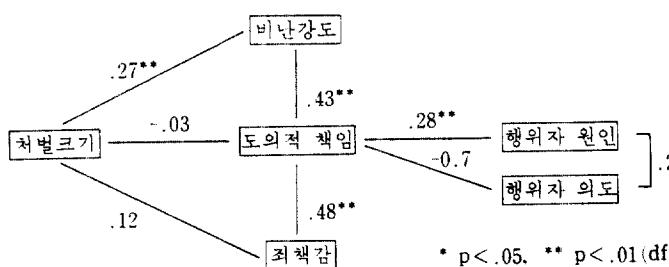
경찰의 조사결과 송경삼씨는 올해 대학을 졸업한 후, S전자에 입사하여 수습사원으로서 가정을 방문하여 S전자의 기업이미지를 조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송경삼씨는 피해자 김씨의 집이 자주 비워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집구조를 눈여겨 보아 둔 것으로 밝혀졌다. (의도가 없는 조건에서는 밀줄친 내용이 '송경삼

씨가 피해자 김성철 씨의 집에 S기업의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해 갔을 때, 아파트 문이 열려 있었고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다'였음)

결과 및 논의

피험자 80명중 반응표기를 잘못한 한명을 제외한 79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첫번째 연구목적을 위해, 즉 각 종속측정치들이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주요 종속측정치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다음, 요인분석하였다. 상관계수는 먼저 (1) 각 종속변인들의 원점수를 기초로 하여 상관계수를 구한 다음, (2) 실험처치(피해의 크기, 행위자의 의도성)가 각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어 전반적으로 상관계수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조건마다 Z점수를 구한 다음 Z점수들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1)의 방식으로 구한 상관계수 행렬과 (2)의 방식으로 구한 상관계수의 행렬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3에 제시된 상관계수들은 원점수에 의한 상관계수들이다. 그림 3에서는 본 모형에서 가정한 잘못(원인, 의도포함), 도의적 책임(비난, 죄책감 포함), 처벌크기에 해당하는 개념을 순서적으로 나열한 다음, 각 종속측정치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이 분석의 목적은 이들 세개념은 서로 다르고 각 개념에 속한다고 본 개념들은 서로 유사한지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림 3에서 보듯, 서로 다르다고 가정한 잘못, 책임, 처벌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거나 미약한 반면에 관련된다고 가정한 개념들(즉 도의적 책임-비난-죄책감, 원인-의도)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각 종속측정치들을



* p < .05. ** p < .01 (df = 77, 양방)

그림 3. 주요 종속측정치들간의 상관계수요약

〈표 1〉 각 종속측정치들의 요인분석결과 요약표

| 문항 | 요인 1 (책임 혹은 비난) | 요인 2 (행위자-피해자 잘못) | 요인 3 (처벌크기) |
|----------|--------------------|----------------------|----------------|
| 행위자의 잘못 | .22* | .41 | .03 |
| 피해자의 잘못 | -.19 | -.76 | -.10 |
| 도의적 책임 | .53 | -.07 | -.11 |
| 징역형(기간) | .21 | .01 | .51 |
| 벌금형(액수) | .04 | .14 | .94 |
| 비난강도 | .67 | .32 | .31 |
| 행위자의 죄책감 | .71 | .14 | .05 |
| 행위자원인 | .28 | .47 | .23 |
| 행위자 의도 | -.02 | .78 | .00 |
| 피해크기 | .34 | -.04 | .26 |
| 재범 가능성 | -.25 | .05 | .18 |
| 인상(냉혹함) | .42 | .09 | .18 |

* 수치는 요인부하량임 ($N=79$).

요인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요인분석으로 하였고, 직교회전인 varimax rotation시켰다. 그 결과가 표 1에 나와있다.

표 1에서 보면, 종속측정치들은 3개의 요인으로 묶였고 전체 설명변량은 62.0%였다. 이들 중 요인부하량이 .40이상인 것들을 보면 요인 1은 도의적 책임(부하량 .53), 비난강도 (.67), 행위자의 죄책감 (.71), 인상(냉혹함)판단치 (.42) 등이다. 이로 미뤄 볼 때, 요인 1은 행위자의 '비난(혹은 도의적 책임)'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요인 2에서는 행위자의 잘못 (.41), 피해자의 잘못 (-.76), 행위자의 원인 (.47), 행위자의 의도 (.78) 등이다. 그러므로 요인 2는 '행위자-피해자의 잘못'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요인 3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징역형 기간 (.51), 벌금형 액수 (.94) 등이다. 이는 '처벌크기' 요인이라 볼 수 있다. 표 1은 책임관련 변인들이 3개의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두번째 연구목적을 위해 두가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들에 일관성있는 효과를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절도행위를 한 행위자의 의도(있음, 없음)와 피해크기(피해복구 유, 무)를 조변하였고 종속변인으로는 도의적 책임의 크기와 형량(징역형) 등이었다. 그 결과 피해크기는 도의적 책임판단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못했으나 ($F<1$, ns), 처벌크기의

판단에는 영향을 주었다 ($F=5.02$, $df=1/75$, $p<.05$). 반대로 행위자의 의도는(피해가 큰 조건에서만) 도의적 책임판단에는 영향을 주었으나 ($F=4.24$, $df=1/75$, $p<.05$), 처벌크기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F<1.0$, ns). 즉 처벌크기의 판단에서는 피해크기가 큰 조건 ($M=10.44$ 개월 징역)이 작은 조건 ($M=8.08$ 개월)보다 컸으나, 행위자가 느낄 것으로 지각한 도의적 책임의 크기는 피해가 큰 조건 ($M=6.21$)과 작은 조건 ($M=5.79$)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행위자의 의도는 도의적 책임의 크기에 영향을 주었다. 즉 의도가 있었던 경우 ($M=5.33$)보다 의도가 없었던 경우 ($M=6.13$)에 행위자는 도의적 책임을 더 많이 느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행위자의 위도가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간에 처벌크기는 다르지 않았다. 위의 결과는 도의적 책임판단과 처벌크기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같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세번째 연구목적인 처벌크기에 대한 본 모형의 예언율(부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처벌크기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 행위자는 단독범이었고, 행위자의 책임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즉 처벌공식에서 행위자의 책임 크기는 확률적으로 1.0인 상황이었다. 그 결과가 다음의 그림 5에 나와 있다.

회귀분석은 stepwise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림 4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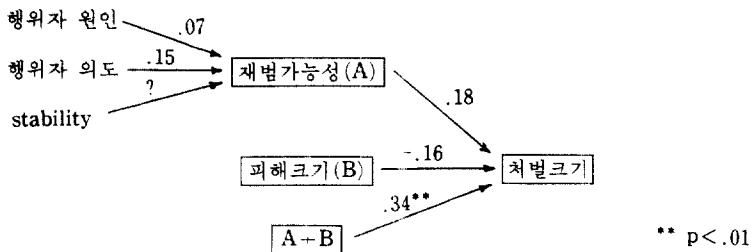


그림 4. 처벌크기를 예언하는 요인들의 회귀계수들

볼 수 있듯, 처벌크기(여기서는 벌금액수임)는 (재범 가능성+피해크기) 요인에 의해서만 예언되었다 ($\beta = .34$, $p < .01$). 회귀분석결과는 사람들이 행위자의 책임이 일정할 때(여기서는 확률적으로 1.0일때), 재범 가능성과 피해크기를 모두 고려하여 행위자의 처벌크기를 결정한다는 하나의 증거이다. 참고로 재범가능성과 피해크기간의 단순 상관계수는 .003(ns)였다.

요약 및 일반적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법정 장면에서, 조직체 장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논의 되는 ‘책임’ 판단에 관련된 심리적 과정을 개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로 지금까지 사회심리학을 중심으로 이뤄진 책임판단 연구들을 주제별로 특히 책임판단을 종속변인으로 한 연구들과 처벌판단을 종속변인으로 한 연구들을 구분하여 정리했다. 둘째로 기존의 책임판단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책임(responsibility)의 개념에 관련된 문제들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책임판단에 관련된 주제를 통합적 모형에서 연구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처벌판단의 3단계 모형을 제시했다. 처벌판단의 3단계 모형은 지금까지의 책임판단과 관련된 연구들이 안고 있는 ‘책임’의 개념문제를 여러 연구자들의 지적과 각기 다른 판단이 이뤄지는 심리적 과정의 흐름에 따라 잘못판단, 도의적 책임판단, 처벌크기에 대한 의사결정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3단계 모형에서 보면 기존 연구들에서 책임과 관련된 판단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여러 변인들을 분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인들이 행위자를 처벌할 때 사용할 것으로 여겨지는 기준들을 언급하였

다. 처벌판단의 3단계모형에서 보면 앞으로의 책임판단 연구들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가지 사항들이 도출된다.

첫째 “책임”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또한 책임판단에 관련된 연구결과들의 일관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관심변인에 따른 종속변인의 설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똑같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책임이란 단어의 다의미성을 고려할 때, 책임판단연구에서는 책임을 “죄책감” 혹은 “도의적 책임”을 뜻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연구자들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책임”개념을 명확히 한 다음, 사람들이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게 되는 조건들을 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Heider(1958)는 어떤 행위가 의도를 지닌 행위이고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타인이나 상황에 의해 강요되지 않은 행위일 때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에게 귀속시킨다고 시사했다. Fincham과 Roberts(1985)는 행위자가 (1) 그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경우, (2)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올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 추리능력을 갖춘 경우, (3)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에게 책임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처벌판단에서는 이런 조건들이외에도 ‘피해의 크기’와 재범가능성 등이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째 책임과 관련된 판단들을 다루는 연구결과들의 외적 타당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연구 모집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일부의 연구(예: McFatter, 1978)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가 대학생 피험자를 사용하고 있다. 책임판단은 대학생 피험자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가 모든 모집단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 법조

인과 일반인이 책임 판단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예 : Carroll & Payne, 1977), 남자와 여자간에도 다를 수 있으며 (예 : Nemeth, 1981), 같은 결과에 대한 성인과 아동의 책임판단이 다르며 (예 : Fincham & Jaspars, 1979), 역시 같은 결과에 대한 책임부여의 크기는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 : Carroll et al., 1987; Phares & Wilson, 1972). 그러므로 특정 피험자계층을 사용하여 나온 결과가 모든 피험자계층에 일반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책임판단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피험자변인을 고려해야 하고, 다양한 피험자 계층을 사용한 연구들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점이 귀인 연구와 다른 점 중의 하나이다.

현재로서는 처벌판단의 3단계 모형이 경험적으로 검증된 모형은 아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 모형의 검증 및 수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모형을 검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만약 3단계 모형이 옳다면 각 단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의 크기' 변인은 처벌의 크기에 영향을 주고 잘못크기의 지각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또한 행위자의 의도는 행위자의 잘못크기 판단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만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크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방식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여러 가설과 추론들을 경험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3단계 모형 중 제 1단계인 잘못판단은 비교적 빠르게 이뤄지는 반면에, 제 2-3단계는 1단계에 비해 매우 느린 과정일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제 2단계(도의적 책임)과 제 3단계(처벌크기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인들도 행위자의 처벌크기를 결정할 때, 가능한 한 전문적 법률가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 많은 인지적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위의 가정이 옳다면, 잘못판단에 비해 도의적 책임판단과 처벌크기 판단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또한 지각자 변인에 따른 판단차이도 잘못판단에서 보다는 처벌크기의 판단에서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 처벌크기의 판단에는 매우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각 요인에서 지각자 변인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위의 가정이 옳은지의 여부도 앞으로 검증할 과제이다.

참 고 문 헌

- 고재홍(1991). 책임판단의 3단계모형 2. 서울대 사회심리학 집단세미나 발표논문.
- 한국일보(1991). 한국일보(표주박 난). 1991. 10. 31.
- Austin, W., Walster, E., & Utine, M.K. (1976). Equity and the law : The effect of harmdoer's 'suffering in the act' on liking and assigned punishment. In Berkowitz and E. Walster (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9(pp.163-190). New York : Academic Press.
- Bray, R.M., Struckman-Johnson, C., Osborne, M.D., McFarlane, J.B., Scott, J. (1978). The effect of defendant status on the decisions of student and community juries. *Social Psychology*, 41, 256-260.
- Brewer, M.B. (1977). An information-processing approach to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58-69.
- Burger, J.M. (1981). Motivational biases in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an accident : A meta-analysis of the defensive attribution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0, 496-512.
- Carroll, J.S., & Payne, J.W. (1977). Crime seriousness, recidivism risk, and causal attributions in judgment of prison term by students and exper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 595-602.
- Carroll, J.S., Perkowitz, W.T., Lurigio, A.J., & Weaver, F.M. (1987). Sentencing goals, causal attribution, ideology,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07-118.
- Carroll, J.S., & Wiener, R.L. (1982). Cognitive social psychology in court and beyond. In A.

- H. Hastorf and A. M. Isen(Eds.), *Cognitive social psychology*. N.Y.: Elsevier North Holland.
- Chaikin, A.L., & Darley, J.M. (1973). Victim or perpetrator: Defensiv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d the need for order and just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268-275.
- Critchlow, B. (1985). The blame in the bottle: Attribution about drunken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11, 258-274.
- Davis, J.H., Kerr, N.L., Atkin, R.S., Holt, R., & Meek, D. (1975). The decision processes of 6- and 12-person mock juries assigned unanimous and two-thirds majority ru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1-14.
- DeJong, W., Morris, W.N., & Hastorf, A.H. (1976). Effect of an escaped accomplice on the punishment assigned to a criminal defenda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192-198.
- Dion, K. (1972). Physical attractiveness and evaluation of children's trans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 207-213.
- Edwards, W. (1954). The theory of decision making. *Psychological Bulletin*, 51, 380-417.
- Efran, M.G. (1974). The effects of physical appearance on the judgment of guilt, interpersonal attraction, and severity of recommended punishment in the simulated jury tas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8, 45-54.
- Fincham, F.D., & Roberts, C. (1985). Intervening causation and the mediation of responsibility for harm doing: The role of limited mental capaciti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 1589-1602.
- Fincham, F.D., & Jaspars, J.M. (1979).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to the self and other in children and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589-1602.
- Fincham, F.D., & Jaspars, J.M. (1980).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rom man the scientist to man as lawyer. In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3(pp.81-138). New York: Academic Press.
- Finney, P., Merrifield, C., & Helm, B. (1976). The actor's behavioral history, his current role, and the divergence between actor and observer responsibility attribu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0, 358-368.
- Fisk, S.T., & Taylor, S.E. (1984). *Social cognition*. London, Mass: AddisonWesley.
- Forst, B., & Wellford, S. (1981). Punishment and sentencing: Developing sentencing guidelines empirically from principles of punishment. *Hofstra university Law Review*, 9, 799-837.
- Harris, B. (1977).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Developmental Psychology*, 13, 257-265.
- Hart, H.L.A., & Honore, A.M. (1965). *Causation in the law*. Oxford: Clarendon Press.
- Harvey, J.H., Harris, B., & Barnes, R.D. (1975). Actor-observer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responsibility and freedo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22-28.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Hogarth, J. (1971). *Sentencing as a human proces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Jones, C., & Aronson, E. (1973). Attribution of fault to a rape victim as a function of respectability of victi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415-419.
- Kelley, H.H. (1971). Moral evaluations. *American Psychologists*, 26, 293-300.
- Landy, D., & Aronson, E. (1969). The influences

- of the characters of the criminal and victim on the decisions of simulated juro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 141-152.
- McFatter, R.M. (1978). Sentencing strategies and justice : Effects of punishment philosophy on sentencing deci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490-1500.
- McFatter, R.M. (1982). Purposes of punishment : Effects of utilities of criminal sanctions on perceived appropriaten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 255-267.
- McGraw, K.M. (1987). Guilt following trasgression : An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247-256.
- McKillip, J., & Posavac, E.J. (1972). Judgment of responsibility for an accident. *Journal of Personality*, 43, 248-265.
- Miller, J.G., Bersoff, D.M., & Harwood, R. L. (1990). Perceptions of social responsibilities in India and in the United States : Moral imperatives or personal decisions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33-47.
- Miller, J.G., & Luthar, S. (1989). Issues of interpersonal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 A comparison of Indians 'and Americans' moral judgments. *Social Cognition*, 7, 237-261.
- Miller, R.J., Chino, A.F., Harney, M.K., Haines, D.A., & Saavedra, R.L. (1986). Assignment of punishment as a function of the severity and consequences of the crime and the status of the defendan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6, 77-91.
- Monahan, F. (1941). *Women in crime*. New York : Washburn.
- Nemeth, C.J. (1981). Jury trials : Psychology and law. In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4 (pp. 309-367). New York : Academic Press.
- Nemeth, C.J., & Sosis, R.H. (1973). A simulated jury study : Characteristics of the defendant and the juror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0, 221-229.
- Phares, E.J., & Wilson, K.G. (1972). Responsibility attribution : Role of outcome severity, situational ambiguity, and internal-external control. *Journal Social of Psychology*, 40, 393-406.
- Piaget, J. (1932).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 Rosen, B., & Jerdee, T.H. (1974). Factors influencing disciplinary judgmen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9, 327-331.
- Rotter, J.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1-28.
- Schroeder, D.A., & Linder, D.E. (1976). Effects of actor's causal role, outcome severity, and knowledge of prior accident upon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2, 340-356.
- Shaver, K.G. (1970a). Redress and conscientiousness in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acciden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6, 100-110.
- Shaver, K.G. (1970b). Defensive attribution : Effects of severity and relevance on the responsibility assigned for an accid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 101-113.
- Shaver, K.G. (1975). *An introduction to attribution processes*. Cambridge, Mass : Winthrop.
- Shaw, J.I., & McMartin, J.A. (1977). Personal and situational determinants of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an accident. *Human Relations*, 30, 95-107.
- Shaw, J.I., & Skolnick, P. (1971).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a happy accid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

- 380-382.
- Shaw, M.E., & Reitan, H.T. (1969).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s a basis for sanctioning behavior.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8, 217-226.
- Shaw, M.E., & Sulzer, J.L. (1964). An empirical test of Heider's levels of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9, 39-46.
- Sigall, H., & Landy, D. (1972). Effects of the defendant's character and suffering on juridic judgment: A replication and clarificatio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8, 149-150.
- Sigall, H., & Ostrove, N. (1975). Beautiful but dangerous: Effects of offender attractiveness and nature of the crime on juridic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410-414.
- Sosis, R. (1974). Internal-external control and the perception of responsibility for an accid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393-399.
- Walster, E. (1966). Assignment of responsibility for an accid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73-79.
- Walster, E. (1967). "Second-guessing" important events. *Human Relations*, 20, 239-250.
- Weiner, B. (1985).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 548-573.
- Wheeler, S., Bonacich, E., Cramer, M.R., & Zola, I.K. (1968). Agents of delinquency control: A comparative analysis. In S. Wheeler (Ed.), *Controlling delinquents*. New York: Wiley.

Fault,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 A Hypothetical Model in Assigning Punishment

Jae-Hong Ko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 Nam University

The present paper is purposed to categorize and summarize researches related to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d the assignment of punishment for an accident, and to propose a hypothetical model of punishment assignment. Since Heider(1958) suggested that the attribution of personal responsibility varies with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to the outcome, many researchers have tried to identify the variables contributing to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d the assignment of punishment. But there are the possibility that the meaning of the dependent variable(eg. responsibility) used in these researches were varied to the research contexts. Thus I tried to clarify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by dividing it into fault,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And these three concepts are connected in a model. I mention the important psychological mechanisms in each judgments and several hypotheses driven from the model.